장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「장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.

2022년 8월 31일

장 성 군 의 회 의



1. 조례명 : 장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제안이유

○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장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・진압 및 구조업무와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하여 장성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임무, 적용범위(안 제1조 ~ 제4조)
- 지원절차 및 지도·감독(안 제6조 ~ 제7조)
- 지원중단 및 포상(안 제8조 ~ 9조)
- 준용 및 시행규칙(안 제10조 ~ 제11조)

4. 예고기간

O 예고기간: 2022. 8. 31. ~ 9. 6.

O 예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의회자료실-조례안예고)

5. 조례안 : 붙임

6. 의견 제출

-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- O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
 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

장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장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·진압 및 구조업무와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하여 장성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의용소방대"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」제2조에 의거 설립된 조직체를 말한다.
- 제3조(임무)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
 - 2. 구조·구급 업무의 보조
 - 3.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
 - 4. 화재예방업무의 보조
 - 5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장성군 의용소방대(이하 "의용소방대"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- 제5조(지원범위) 장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
 - 2.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피복·장비·물품 등 구입비 및 유지·관리비
 - 3.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용경비
 - 4.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
 - 5.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- 제6조(지원절차 등) ①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지방보조금 신청서
 - 2. 사업계획서
 - 3.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
 - 4.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「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·통보하여야 한다.
- 제7조(지도 및 감독)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

- 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8조(지원 중단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「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 확을 명한다.
 - 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2.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 - 3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4. 제7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제9조(포상) 군수는 화재진압, 구조·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「장성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